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2차 교육위원회)  
2020. 7. 15.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6월 29일
- 회부일자: 2020년 7월 2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, 구성과 운영, 관리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, 존속기한,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위원회 안건 처리와 관련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, 구성과 운영, 관리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정하면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,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에 존속기한을 정하고 매년 존속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고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음.
- 아울러, 안 제9조제4항과 제5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,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,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. 또한, 안 제9조제7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도민을 위촉하려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면서,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정하고, 충청북도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14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, 전문가, 이해 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위원회의 관리와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  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가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고, 설치된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